

「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·운영 민간위탁(재위탁)  
동의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3년 10월 6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3년 10월 10일

라. 상정일자: 2023년 10월 17일

제27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환경교통국장 박 은 희

#### 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(음식물쓰레기)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조성된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의 시설운영 민간위탁 계약기간(3년)이 202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한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함

#### 다. 주요내용

- 사 무 명 :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·운영 민간위탁

○ 추진근거

- 1) 「폐기물관리법」 제62조 (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)
- 2) 「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 제14조 (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·운영)
- 3)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 및 제5조 (의회 동의 및 보고)

○ 위탁기간 : 2024. 1. 1. ~ 2026. 12. 31.(3년)

○ 수탁자 선정방식 : 제한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

- 1) 선정방법 : 수탁기관 선정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
- 2) 평가내용 : 전문성, 기술력, 동종시설 운영실적 등 종합심사
- 3) 평가방법 : 수탁제안서 자료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

○ 사업개요

- 1) 시설명 :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
- 2) 위치 : 경북 칠곡군 석적읍 3공단1로 62-6 (구미하수처리장 내)
- 3) 처리용량 : 95톤/일
- 4) 가동일 : 2006. 1.부터
- 5) 처리방식 : 사료화
- 6) 주요시설

구분	연면적(m <sup>2</sup> )	주요시설	사 용 용 도
계	746.72		
지하1층	125.19	저장조	음폐수 저장조
지상1층	576	공장동	사료화 시설 운영
지상1층	45.53	사무실	사무실

○ 소요예산 : 7,525백만원

※ 산출근거 : 2024년 원가계산 용역 결과에 따름

(단위:백만원)

구분	2024년	2025년	2026년	비 고
운영비	2,493	2,508	2,524	예상금액 (매년 0.6% 상승률 반영)

○ 위탁사무

- 1) 반입되는 생활(음식물)폐기물 계량·자료 관리
- 2) 95톤/일 운전·유지 관리 (처리능력 유지)
- 3) 잔재물 계량 및 적정 처리 (안전한 최종 처리 완수)
- 4) 전력 설비, 발전설비 등 운전·유지 관리 (전기시설물 기능 유지)
- 5)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(전화, LAN설비 등)
- 6) 계량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
- 7) 견학·방문 안내

○ 성과평과결과 : 탁월(92.3점)

※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민간위탁 성과지표 개발 용역 결과에 따름

○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## 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62조
- 「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 제14조
-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5조

○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
- 기 타 : 2023년 제2차 구미시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적정,  
2023년 제3차 구미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

#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기 동

#### ○ 본 동의안은

- 구미하수처리장 내에 위치한 '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'의 시설 운영 민간위탁 계약기간(3년)이 '23년 12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해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#### ○ 검토 결과,

- 제한경쟁입찰 절차를 통하여 유지관리와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「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와 관련, 위탁운영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